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2. 7 선고 2022가단222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A이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C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5. 접수 제31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B가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5. 접수 제4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김수정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여주시 임야 1391㎡

2. 경기도 이천시 대 194.8㎡

3. 경기도 이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다가구주택(계단실) 10.81㎡

2층 다가구주택 115.92㎡

3층 다가구주택 115.92㎡

4층 다가구주택 115.9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과세 경위

1) 소의 C는 2012. 12. 10.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주) E라는 주방가구 제조업 법인을 출자지분 100%로 설립하여 19. 03. 07.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 원고가 2013. 01. 01. ~ 2017. 12. 31. 귀속에 대하여 2018. 10. 01. ~ 2018. 10. 31. 진행한 일반통합조사결과 ㈜E는 2018. 12. 10. 부가가치세 등 총 14건 673,037,400원을 고지 받았습니다. 그 외 체납액을 포함 소 제기일 현재 총 26건 977,647,420원을 체납하고 있고, 출자 지분 100%인 출자자 C에게 총 26건 977,647,420원 제2차 납세의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E 사업자기본사항조회, 갑 제2호증 ㈜E 조사종결분 개별상세조회, 갑 제3호증 ㈜E 조사결정고지 내역, 소갑 제 4호증 ㈜E 체납유무 조회)

3) C는 상기 조사 결과 인정상여처분으로 2013 ~ 2017년 귀속 소득세 총 5건 823,350,980원을 결정고지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4,325,550원을 결정고지 받았습니다. (갑 제5호증 C 인정상여 소득세결정고지 내역, 갑 제6호증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4) C는 소 제기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E 제2차납세의무 지정 26건, 인정상여 소득세 결정고지 5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 고지 1건 등 총 32건 2,073,414,0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C 체납유무 조회).

<표1> 소 제기일 현재 C의 국세 체납액

(단위 : 원)

번호	납세의무구분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1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801	2018-09-06	2018-09-30	10,321,480	737,300
2	제2차납세의무자	법인세	201312	2018-12-10	2018-12-31	70,674,320	97,176,840

3	제2차납세의무자	법인세	201712	2018-12-10	2018-12-31	69,052,970	57,051,650
4	제2차납세의무자	법인세	201612	2018-12-10	2018-12-31	94,026,230	129,285,750
5	제2차납세의무자	법인세	201512	2018-12-10	2018-12-31	93,610,970	128,714,970
6	제2차납세의무자	법인세	201412	2018-12-10	2018-12-31	71,970,080	98,958,600
7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307	2018-12-10	2018-12-31	37,792,400	51,964,410
8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601	2018-12-10	2018-12-31	27,960,390	38,445,400
9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701	2018-12-10	2018-12-31	25,233,220	34,695,250
10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607	2018-12-10	2018-12-31	38,499,790	52,948,830
11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407	2018-12-10	2018-12-31	38,253,890	52,598,900
12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501	2018-12-10	2018-12-31	33,435,310	45,973,320
13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507	2018-12-10	2018-12-31	31,962,670	43,948,670
14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707	2018-12-10	2018-12-31	22,543,240	30,996,750
15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401	2018-12-10	2018-12-31	17,621,450	24,229,450
16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807	2018-12-10	2018-12-31	32,302,410	44,415,440
17	제2차납세의무자	사업소득세	201809	2019-01-03	2019-01-31	1,079,430	1,475,860
18	제2차납세의무자	근로소득세	201809	2019-01-03	2019-01-31	272,790	280,970
19	제2차납세의무자	사업소득세	201811	2019-03-07	2019-03-31	1,421,910	1,922,940
20	제2차납세의무자	근로소득세	201811	2019-03-07	2019-03-31	312,370	321,740
21	원납세자	양도소득세	201801	2019-01-25	2019-05-15	4,325,550	5,785,350
22	제2차납세의무자	사업소득세	201812	2019-04-05	2019-05-30	537,140	553,250
23	제2차납세의무자	근로소득세	201812	2019-04-05	2019-05-30	345,290	355,640
24	제2차납세의무자	퇴직소득세	201812	2019-04-05	2019-05-30	180,890	186,310
25	원납세자	종합소득세	201301	2019-05-23	2019-06-15	146,787,260	195,226,870
26	원납세자	종합소득세	201401	2019-07-09	2019-07-31	120,174,320	158,930,240
27	원납세자	종합소득세	201701	2019-07-09	2019-07-31	133,124,620	176,057,120
28	원납세자	종합소득세	201601	2019-07-09	2019-07-31	186,794,410	247,035,290
29	원납세자	종합소득세	201501	2019-07-09	2019-07-31	236,470,370	312,731,760
30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901	2019-09-01	2019-09-30	21,805,350	28,510,490
31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901	2019-12-01	2019-12-31	5,529,000	7,104,510
32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1901	2020-06-03	2020-06-30	3,866,470	4,794,180
합 계						1,538,475,510	2,073,414,050

나. 소외 C의 부동산 양도 경위

- 1) C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함니다)에 관하여 2018. 11. 1. 피고1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5. 피고1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 C는 2018. 11. 1. 별지 목록 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1/4지분(이하 '이 사건 2부동산'라

합니다)에 관하여 피고2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5. 피고2 B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8호증 동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이며, 피고1 A은 C의 동생이고, 피고2는 C의 아버지입니다. (갑 제9호증)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 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11.0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8. 11. 1. 당시 세무조사가 종결된 직후로 원고의 ㉞E에 대한 조세채권, C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세 조세채권 및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㉞E가 위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C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서 C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04. 29. 선고 2005다6808판결,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가.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는 사해행위 당시 세무조사 결과로 F와 C 본인에게 고액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하여 피고1 A과,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하여 피고2 B와 2018. 11. 1. 매매계약을 체결 후 2018. 11.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8. 11. 1. 현재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2019.1~2월경 양도한 부동산 2건(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G호 230,000,000원, 여주시 H건물 I호 53,000,000원)을 포함한 428,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496,388,446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갑 제10호증).

또한 사해행위 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나머지 적극재산 모두를 세무조사 직후인 2019.1~2월경 양도하여 무재산 상태가 된 점으로 미루어 C의 재산 매매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09.07. 선고 2006다59489 판결 참조).

4. 채납자 C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1 A은 C의 동생, 피고2 B는 C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살펴보면 매매당사자 본인들 간에 작성한 쌍방향의 계약서이며, 잔금일이 각각 2018. 11. 15.과 2018. 12. 04.로 되어 있으나 잔금일 이전인 2018. 11. 5. 동기 접수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11호증 각 매매계약서)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2022. 08. 22. 중부지방법국세청에서 시달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 일괄선정 추적조사 대상자" 에 채납자 C가 시달대상으로 내려와서 채납자 C의 부동산이 피고들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여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 제12호증)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끝.

